

집합투자규약 및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에셋플러스자산운용(주)

1. 대상 투자신탁 :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. 변경시행일 : **2018.10.04**

3. 변경사유

- 종류 C-Pe, 종류C-P2e 판매보수 변경

4. 변경내용

항 목	변경사유	현행	변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9조 (보수)	종류 C-Pe, 종류 C-P2e 판매보수 변경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)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)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집합투자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판매회사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신탁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일반사무관리회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종류 C-Pe</td> <td>0.880</td> <td>0.305</td> <td>0.030</td> <td>0.010</td> </tr> <tr> <td>종류 C-P2e</td> <td>0.880</td> <td>0.300</td> <td>0.030</td> <td>0.0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회사	종류 C-Pe	0.880	0.305	0.030	0.010	종류 C-P2e	0.880	0.300	0.030	0.010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집합투자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판매회사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신탁업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일반사무관리회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종류 C-Pe</td> <td>0.880</td> <td>0.130</td> <td>0.030</td> <td>0.010</td> </tr> <tr> <td>종류 C-P2e</td> <td>0.880</td> <td>0.180</td> <td>0.030</td> <td>0.0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회사	종류 C-Pe	0.880	0.130	0.030	0.010	종류 C-P2e	0.880	0.180
구 분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회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C-Pe	0.880	0.305	0.030	0.010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C-P2e	0.880	0.300	0.030	0.010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회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C-Pe	0.880	0.130	0.030	0.010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C-P2e	0.880	0.180	0.030	0.010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칙	-	<추가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0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